스위스의 법적 수단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유언과 유류분 규칙

스위스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자필로 작성하고 날짜를 기재하여 서명한 것) 또는 긴급한 경우 구수(口授)로 할 수 있습니다.[1]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이후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생존 배우자도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부모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언자의 자유처분분은 상속재산의 2분의 1입니다.[2] 디지털 자산은 상속재산의 일부이며, 사망 시점의 가치로 유류분 계산에 산입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 이는 실무상의 문제를 낳습니다. 사망일의 가치가 상속재산 분배 시점의 가치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토큰을 받는 상속인은 가격 변동을 떠안고 현금을 받는 상속인은 그렇지 않습니다.[3] 특정 상속인에게 디지털 자산을 현물로 배분하는 유언은 그 배분이 고정 가액의 유증인지 잔여재산의 지분인지를 밝혀야 하며, 형평을 맞추기 위해 토큰을 매각할 권한을 유언집행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유언은 키 관리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지시를 담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 상속재산의 비용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보관자나 공동서명자에게 유언집행자와 협력하라는 지시, 그리고 매각하거나 현물로 이전할 권한이 그것입니다. 스위스법은 유언집행자에게 관리 권한과 유언자의 지시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므로, 이러한 지시는 구속력을 갖습니다.[4]

실무 메모

디지털 자산에 관한 스위스 유언 조항은 다섯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유언장 자체에 주소를 열거하지 말고 유언집행자가 보관하는 재산목록을 참조하여 자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개봉 시 공개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술 자문인과 수탁기관을 선임할 권한을 가진 유언집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키 조각, 시드 기록 또는 공동서명권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유언집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인도하거나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유언집행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면제해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자산이 사망일 가치에 따른 현물 특정유증으로 이전되는지, 아니면 잔여재산의 일부로 이전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세금, 채무,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토큰을 매각할 권한을 유언집행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제Q편 제III장에 모범 조항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언집행자가 겪는 문제

스위스의 유언집행자는 칸톤(주) 당국으로부터 지정증명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 수탁기관, 등기소와 업무를 처리합니다.[5] 스위스 은행과 수탁기관은 이 증명서와 통상의 신원 확인만으로 유언집행자에게 디지털 자산을 인도합니다. 장애물은 외국 거래소입니다. 대부분은 자국 관할권의 검인장이나 긴 서류 인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아예 절차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에서 거래소 계정을 발견한 유언집행자는 몇 달에 걸친 서신 교환을 예상하고, 거래소 관할권의 현지 변호사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소유자 생전에 상당한 잔고를 거래소에서 빼내어, 전달 체계를 갖춘 수탁기관이나 자기 수탁으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스위스의 상속세는 칸톤세입니다. 추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밖의 상속인에게는 누진세를 부과하며, 취리히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면세합니다.[6] 그럼에도 유언집행자는 칸톤 당국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사망일 기준으로 토큰을 평가해야 하며, 칸톤 당국은 가능한 경우 연방세무청(FTA)의 시세표를 사용합니다.

부부재산제와 사전 후견 위임

스위스의 기본 부부재산제인 소득참여제에 따르면, 혼인 중 각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이혼이나 사망 시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여기에는 혼인 중 얻은 소득으로 매입한 디지털 자산도 포함됩니다. 혼인 전에 소유한 자산이나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자산은 고유재산으로 남습니다.[7] 혼인 전에 매입한 토큰의 가치 상승분은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근로소득으로 매입한 토큰은 취득재산입니다. 토큰 배분의 베스팅 기간 중에 혼인한 창업자는 해제되는 트랜치가 취득재산이 된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별산제를 채택하거나 소득참여제를 변경하는 공정증서 형식의 부부재산계약이며, 배우자들은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이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8] 이 계약은 디지털 자산을 고유재산으로 열거하고 증명책임을 배분해야 합니다. 스위스 민법 제200조는 자산의 성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취득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9]

판단능력 상실에 대해서는 사전 후견 위임(Vorsorgeauftrag)으로 대비합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판단능력을 잃을 경우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법률 문제에서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사전 후견 위임은 자필증서나 공정증서로 작성하며, 판단능력 상실 시 성인보호당국이 그 효력을 확인합니다.[10] 사전 후견 위임은 명시적으로 디지털 자산까지 대상으로 하고, 수임인이 키 조각을 확보하고 공동서명자에게 지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임인의 기본 권한은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CC, SR 210, 제498조~제506조(유언 처분의 방식; 제505조에 따른 자필증서 유언). ↩
2. CC, SR 210, 제471조(직계비속과 생존 배우자 또는 등록 동반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Federal Act of 18 December 2020에 의해 개정, 2023년 1월 1일 시행; 제457조 및 제462조(직계비속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제D편 제VIII장 참조. ↩
3. CC, SR 210, 제474조(자유처분분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은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 제617조(분할 시점의 시가 평가). ↩
4. CC, SR 210, 제517조(유언 처분에 의한 유언집행자 지정) 및 제518조(유언집행자의 권리와 의무: 상속재산 관리, 채무와 유증의 이행, 유언자의 지시 또는 법률에 따른 분할). ↩
5. CC, SR 210, 제517조 제3항(당국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확인); 칸톤 실무(유언집행자 증명서, Willensvollstreckerzeugnis). ↩
6. Canton of Zug, Gesetz über die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 (BGS 634.1), § 5(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면세); Canton of Zürich,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gesetz (LS 632.1), § 11(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면세). 제G편 제I장 참조. ↩
7. CC, SR 210, 제196조~제198조(취득재산과 고유재산), 제204조(부부재산제의 해소) 및 제215조(각 배우자는 상대방 잉여분의 2분의 1에 대한 권리를 가짐). ↩
8. CC, SR 210, 제182조(혼인 전 또는 혼인 후 공정증서에 의한 부부재산계약) 및 제247조~제251조(별산제). ↩
9. CC, SR 210, 제200조 제3항(취득재산의 추정). ↩
10. CC, SR 210, 제360조~제369조(사전 후견 위임: 지정, 제361조에 따른 방식, 제363조에 따른 성인보호당국의 확인). 제D편 제VIII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